

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39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9. 6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 등을 위한 사항

나.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
1)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

2)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

3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가능

다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1) 평상시 및 재난 발생 시로 구분 운영

2)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청 시 공동위원장이 소집

라. 위원의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
3. 근거법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

4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의견없음

라. 입법예고: 2017. 7. 31. ~ 2017. 8. 21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
2.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
3.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·제보
4. 재난 발생 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,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
5.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
6.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
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

2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, 단체·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

3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활동은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평상시: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
2. 재난 발생 시: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

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1.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
2.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
3.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
는 경우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·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근거법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- 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**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"중앙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지역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의안
번호

1392

【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】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9. 6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8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건설도시국장 서인보)

가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.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2.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3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4. 위원회의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5. 위원의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원기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에 관한 협의와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 등을 위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,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.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